

서울특별시의회
제333회 정례회

의안
번호

3331

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
운용계획 변경안

검토보고서



2025. 12. 3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검토보고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3331호, **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계획 변경안**은 '25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 지원에 따라 2025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당초 대비 20%를 초과하여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 지원 및 이에 따른 예치금 감소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함
- 나. 운용규모 : 834,041백만원(당초 계획 대비 △11,269백만원 감소)

〈표 2-1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 변경내역

(단위 : 백만원)			
구 분	1차 변경 (A)	2차 변경(안) (B)	증 감 (C=B-A)
합 계	845,310	834,041	△11,269
기 타 회 계 전 입 금	285,367	285,367	0
이 자 수 입	40,770	29,501	△11,269
예 탁 금 원 금 회 수	80,000	80,000	0
예 치 금 회 수	439,173	439,173	0

○ 수입계획 변경

- 공공예금 금리 하락 및 순세계잉여금 적립시기 조정에 따른 이자수입 $\triangle 11,269$ 백만원 감소
 - ▶ 이자수입 : (당초) 40,770백만원 → (변경) 29,501백만원

〈표 2-2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출계획 변경내역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 / 편성목		1차 변경 (A)	2차 변경(안) (B)	증 감 (C=B-A)	증 감률 (D=C/A)
합 계		845,310	834,041	△11,269	△1.3%
효 율 적 재 정 운 영	-	150,000	150,000	0	(신규)
공 사 · 공 단 상 환 지 원	-	150,000	150,000	0	(신규)
서울교통공사 출자 지원	-	150,000	150,000	0	(신규)
출 자 금	-	150,000	150,000	0	(신규)
재 무 활 동	845,045	683,731	△161,314	△19.1%	
보 전 지 출	845,045	683,731	△161,314	△19.1%	
여 유 자 금 예 치	290,869	129,015	△161,854	△55.6%	
예 치 금	290,869	129,015	△161,854	△55.6%	
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	419,746	419,746	0	0	
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	134,430	134,970	540	0.4%	
행 정 운 영 경 비	265	310	45	17.0%	

○ 지출계획 변경

-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 지원으로 출자금 150,000백만원 증가
 - 출자금 : (당초) 0백만원 → (변경) 150,000백만원
-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적용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상환액 540백만원 증가
 - 차입금 이자상환 : (당초) 134,430백만원 → (변경) 134,970백만원
- 모집공채 추가 발행에 따른 수수료 45백만원 증가
 - 기본경비 : (당초) 265백만원 → (변경) 310백만원
- 이자수입 감소 및 출자금 증가 등 수입·지출 변동사항 반영하여 연도 말 예치금 △161,854백만원 감소
 - 예치금 : (당초) 290,869백만원 → (변경) 129,015백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

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6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고,
(...)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2.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채 또는 공단채의 상환을 위해 출자금, 보조금 또는 용자금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III. 검토의견¹⁾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금을 지출계획 함에 따라 지출계획 중 예치금 감소도 연동하여 반영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 - 수입계획의 경우, 공공예금 금리 하락²⁾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($\Delta 112억 6,900만원$)을 수입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이며,

〈표 3-1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 변경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1차 변경 (A)	2차 변경(안) (B)	증 감 (C = B - A)
합 계	845,310	834,041	$\Delta 11,269$
기 타 회 계 전 입 금	285,367	285,367	0
이 자 수 입	40,770	29,501	$\Delta 11,269$
예 탁 금 원 금 회 수	80,000	80,000	0
예 치 금 회 수	439,173	439,173	0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계획도 $\Delta 112억 6,900만원$ 을 감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이나, ①**효율적 재정운영**을 신규 정책사업으로 신설하여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금 1,500억원을 순증하여 지출계획하고, 다른 정책사업인 ②**재무활동** 중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(주택도시기금 차입금 적용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상환액 5억 4,000만원)과 예치금(출자금 증가 및 이자 수입 감소로 인한 $\Delta 1,618억 5,400만원$)을 조정하고, ③ **행정운영경비** 또한 모집 공채 추가 발행에 따른 수수료³⁾ 4,5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고자 하는 것임

1) 검토보고서의 경우,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

2) '25년도 공공예금 금리 현황

	'25년 편성 당시 금리	'25년 실금리
예탁금 금리	4.17%(예상)	3.15%
정기예금 금리	3.5%(예상)	2.84%

3) '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' 국비보조사업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,500억원을 예탁하고자 재난관리기금(재난계정)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수수료

- 「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」
- ① 의안번호 : 3129, ② 발의 : '25. 8.29, ③ 의결 : '25. 9.12(원안가결)

〈표 3-2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출계획 변경내역

		(단위 : 백만원, %)			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 / 편성목		1차 변경 (A)	2차 변경(안) (B)	증 감 (C=B-A)	증 감률 (D=C/A)
합 계		845,310	834,041	△11,269	△1.3
효 율 적 재 정 운 영	공 사 · 공 단 상 환 지 원	-	150,000	150,000	(순증)
	서울교통공사 출자 지원	-	150,000	150,000	(순증)
	출 자 금	-	150,000	150,000	(순증)
	재 무 활 동	845,045	683,731	△161,314	△19.1
보 전 지 출	여 유 자 금 예 치	845,045	683,731	△161,314	△19.1
	예 치 금	290,869	129,015	△161,854	△55.6
	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	419,746	419,746	-	-
	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	134,430	134,970	540	0.4
	행 정 운 영 경 비	265	310	45	17.0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⁴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
-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계획은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해 정책사업(**효율적 재정운영**)을 신설하여 출자금 1,500억원을 순증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되는 바,

4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- 동 기금의 설치 근거인 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⁵⁾는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금을 지출계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제출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 - 아울러 서울교통공사의 설립 근거인 「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⁶⁾는 서울교통공사에 출자하는 자본금의 최대한도인 수권자본금을 25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, '25년 10월 현재까지 24조 2,955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확인되어⁷⁾ 조례로 정한 출자한도에 여력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
- 다만, 지출계획 중 출자금을 편성할 경우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⁸⁾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어 동 출자금 편성과 관련된 「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」⁹⁾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,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증액 요청된 출자금의 경우, 소관 상임위원회의 출자동의안 승인 여부와 연동하여 지출계획 변경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5) 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

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고,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제1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사용하는 총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

1. 일반회계,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지방채원리금 상환
2.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채 또는 공단채의 상환을 위해 출자금, 보조금 또는 응자금
3. 해당 연도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4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5.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 및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
6. 그 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운용 · 관리를 위한 경비

6) 「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자본금)

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7) 서울특별시, 도시철도과-13390 ('25.10.29) “서울교통공사 출자금 현황('23~'25년) 자료요구”

8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9) 「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」

① 의안번호 : 3334, ② 발의 : '25.10.18, ③ 회부 : '25.10.23